

# 경영위원회 운영규칙



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목 적)

이 규칙은 정관 제32조의2에 근거하여 經營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1. 상근이사라 함은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자 중에서 회사로부터 보직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사외이사 또는 대우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.
2. 본 규정의 집행위원이라 함은 회사의 대우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보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3. 사외이사라 함은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보직이 부여되지 아니한 이사를 말한다.

### 제 3 조 (권한 및 기능)

1. 경영위원회는 理事會運營規程 및 決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理事會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.
2.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할 수 있다.
3. 경영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상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 및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갖는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 4 조 (구 성)

1.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상근이사로 구성한다.
2. 집행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함)은 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그러나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.

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
| 관리번호 | 규칙-A-002    |
| 개정번호 | 04          |
| 개정일자 | 2019.03.25. |

## 제 5 조 (위원장)

1.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2.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.

## 제 6 조 (삭제 2019.03.25.)

## 제 7 조 (경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의 출석 등)

위원장은 관계 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설명을 시키거나 그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.

## 제 3 장 회 의

## 제 8 조 (종 류)

1. 경영위원회는 정기 경영위원회와 임시 경영위원회로 한다.
2. 정기 경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장소와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. 다만, 부의 및 보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.
3. 임시 경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## 제 9 조 (소집권자)

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 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위원장직무 대행의 순위에 따른다.

## 제 10 조 (소집절차)

1. 경영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24시간 이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2. 경영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3. 위원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간부를 참석시킨 임원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## 제 11 조 (결의방법)

1. 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 
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유·무선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경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본 기준 제13조의 긴급사항 발생시는 본 기준 제14조의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도 있다.
2. 경영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3. 전항의 기준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제 12 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1. 경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2. 경영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경영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.

## 제 13 조 (긴급사항)

1.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경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.
2. 전 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경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경위와 집행사항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 14 조 (서면결의)

1. 위원장은 경영위원회 심의사항중 간이한 사항이나 제13조의 긴급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.
2. 전항의 경우 그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## 제 4 장 부 의 사 항

## 제 15 조 (부의사항)

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.

1. 경영기본방침 및 정책
2. 연도 경영계획 및 투자계획
3. 중장기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

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
| 관리번호 | 규칙-A-002    |
| 개정번호 | 04          |
| 개정일자 | 2019.03.25. |

4.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폐
5.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
6. 사업(본)부단위 조직개편, 업무분장, 인력조정
7. 급여, 근무제도 및 복리후생 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
8. 예산·회계·자금조달의 기본방침
9. 기술도입계획 및 기술공여정책
10. 연도 및 중장기 기술개발 기본계획
11. 출자회사 경영평가 및 심사분석
12. 자기자본 50%미만의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
13.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
14. 5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
15. 100억원 이상의 증설 투자
16. 100억원 이상의 보완투자
17. 타법인 출자 및 처분에 관한 사항 (이사회 승인사항 제외)
18.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사항 (이사회 승인사항 제외)
19. 기술도입계약 체결 및 기술이전, 제휴에 관한 계약 체결
20. 신물질, 신기술 관련 특허권 취득, 양수, 양도에 관한 계약 체결
21.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10%이상 상당의 단일계약 체결
22.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10%이상 상당 단일 판매대행 또는 공급계약 체결 또는 해지
23. 최근 사업년도 생산액의 10%이상 생산 중단 또는 폐업
24.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10%이상 상당 제품 수거 또는 파기
25. 기타 총무에 관한 중요사항 (전사차원 중요 행사계획, 중대한 사고 조사처리 등)
26. 기타 각 사업(본)부 및 임원회의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

## 제 16 조 (보고사항)

경영위원회는 별도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기 타 사 항

### 제 17 조 (의사록)

1. 경영위원회의 의사경과 요령 및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간사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.
2. 의사록은 필요할 경우 집행부서의 업무집행을 위해 집행부서에서 사본으로 보관할 수 있다.



## 경영위원회 운영규칙

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
| 관리번호 | 규칙-A-002    |
| 개정번호 | 04          |
| 개정일자 | 2019.03.25. |

### 제 18 조 (간 사)

간사는 경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 제 19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칙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.

